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93호

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건설부 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274호(2017.7.27.) 및 서초구 고시 제2018-13호(2018. 01.19.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되어, 2003.06.27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, 서초구 고시 제2006-1호(2006.01.02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초구 고시 제2017-151호 (2017.11.2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2. 13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1번지외 1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6,607.7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(대표 장치영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, 702호(잠원동, 덕성빌딩)
4.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일 : 2018. 12. 06.
5. 관리처분계획 변경 내용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대지면적 : 23,726.56m²

2) 건축규모 : 지상35/지하3층, 아파트7개동(596세대), 부대·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해당없음)

공급 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
	계	60m ² 미만	85m ² 미만	85m ² ~114m ² 이하	114m ² 이상
계	596	66	242	192	96
토지등소유자	408	-	120	192	96
보류시설	-	-	-	-	-
일반분양	135	13	122	-	-
임 대	53	53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 설 : 도로 976.80m², 녹지 1,904.34m²

2) 폐 지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(예정) 시기 : 2018. 1 ~ 2018. 7.

6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4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